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730

발의연월일: 2022. 10. 4.

발 의 자:김정재·권명호·노용호

박대출 • 박정하 • 이 용

이주환 · 이철규 · 정운천

한무경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의 예 방·대비·대응·복구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글로벌 기후위기로 인해 자연재난 및 이상기후가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고, 재난 예방으로는 모든 재난을 막을 수 없어 이로 인한 신체와 재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일상 회복이 어려운 실정임.

또한,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·유통업 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 시설은 피해액에 산정되지 않아 관련 시설 밀집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되며 국비 지원 및 공공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특별 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금액에 농업·임업·어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· 유통업 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 시설 등의 피해를 포함시키고,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조, 제60조 및 제66조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6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다음 각 호의 피해를 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한다.
  - 주 생계수단인 농업・어업・임업・염생산업(鹽生産業)・유통업 및 소상공인・중소기업의 시설
  - 2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

제6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"를 "피해주민 및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통하여 온전한 일상회복이 되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중 "주거용 건축물"을 "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(기계실·전기실·변전실·발전실·공기조화실·승강기 또는 주차장등을 포함한다)"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

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6호(종전의 제5호) 중 "생계안정"을 "일상회복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7호) 중 "농업·어업·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"을 "농업·임업·어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"을 "농업·임업·어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·유통업 및 소상공인·중소기업 시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, 승강기,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 지원
- 7의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-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실질적 지원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6조의2제1항 중 "지급할 수 있다"를 "지급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.

제2조(피해규모 산정에 관한 적용례) 제6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

년 8월 28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'힌남노'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	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~ ③			
(생 략)	(현행과 같음)			
<u>&lt;신 설&gt;</u>	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			
	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이			
	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피해			
	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			
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 ①	제60조(특별재난지역의 선포) ①			
~ ③ (생 략)	~ ③ (현행과 같음)			
<u>&lt;신 설&gt;</u>	④ 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			
	선포 시 다음 각 호의 피해를			
	산정하여 피해금액에 반영한다.			
	1.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			
	임업・염생산업(鹽生産業)・			
	유통업및 소상공인・중소기업			
	의 시설			
	2.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			
	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			
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	제66조(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			
조 등의 지원) ①・② (생 략)	조 등의 지원) ①·② (현행과			
	같음)			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	3			
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<u>피해주민</u>				
구와 <u>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</u>	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 복			

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수 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따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,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,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

- 1. (생략)
- 2. <u>주거용 건축물</u>의 복구비 지원

<신 설>

<u> 구들</u>	통하여	온전	한	일상	회를	宁
이 되면	도록 디	음 2	각 호	의	지유	<u>및</u>
<u>을</u> 하여	녀야 한	다				_
						_
						_
						_
						_
						_
						_
						_
						_
						_
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주거용 건축물과 상업용과 및 그 부속시설(기계실·전기 실·변전실·발전실·공기조 화실·승강기 또는 주차장 등 을 포함한다)-----
- 3.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 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주택 및 시설 중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이라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차장, 승강기, 전기 및 수도 시설 등에 대한 복구비

<u>3. · 4.</u> (생 략)

5. 세입자 보조 등 <u>생계안정</u> 지원

<u>6.</u> (생 략)

<신 설>

7. 주 생계수단인 <u>농업·어업·</u> 임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 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

8. • 9. (생략)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, 사회재난으 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

-	지원
<u>4.</u>	· <u>5.</u> (현행 제3호 및 제4호와
	같음)
6.	일상회복
	_
7.	(현행 제6호와 같음)
	의2.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
	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또
-	고제18대 씨는 고 8 6 년 고
	는 「상가건물 임대차보호
	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
	건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
	해당 건축물과 시설의 복구를
	 위한 지원
	<u>농업·임업</u>
<u>o.</u>	<u>он пн</u>
	· 어업·염생산업(鹽生産業)
-	·유통업 및 소상공인·중소
	<u>기업 시설</u>
9.	· <u>10.</u> (현행 제8호 및 제9호
	와 같음)
4	, – , .
4	)

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후단 신설>

#### ⑤ ~ ⑦ (생 략)

제66조의2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신속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66조에 따라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지원하는비용(이하 "복구비등"이라 한다)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제59조 또는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46조에따른 복구계획 수립 전에 미리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선지급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으로 인한 피해 물량 등에 관 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지원
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실질적
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
다.
<u></u> . ⑤ ~ ⑦ (현행과 같음)
제66조의2 ①
X
급하여야 한다.
<삭 제>
<del></del>